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한신 의원 대표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007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한 · 신, 박승진, 박춘선,  
박칠성, 봉양순, 왕정순,  
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 
임만균, 정준호 의원(11  
명)

### 1. 제안이유

-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-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상위법에 따라 요청하도록 규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피학대동물” 정의 규정함(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)
- 나.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함(안 제26조 신설)
- 다. 동물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요청하도록 규정함(안 제27조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동물보호법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“피학대동물”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관련정보”를 “관련 정보”로 한다.

제25조의2제4항 중 “서울특별시에”를 “시에”로 한다.

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,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(실태조사)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27조(동물보호정보의 활용) 시장은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 활용의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br>1. ~ 10. (생    략)<br><u>〈신    설〉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<br>1. ~ 10. (현행과 같음)<br>10의2. “ <u>피학대동물</u> ”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.   |
| 11. ~ 16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. ~ 1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6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(생    략)<br>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<u>관련정보</u> 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<br>③ ~ ⑤ (생    략) | 제16조(동물의 반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 <u>관련 정보</u> -----<br>-----<br>-----.<br>③ ~ ⑤ (현행과 같음) |
| 제25조의2(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) ① ~ ③ (생    략)<br>④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<u>서울특별시</u>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, 동물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반려동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5조의2(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>④ -----<br>---- <u>시에</u> -----<br>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소유자등 이어야 한다.

⑤、⑥ (생 략)

〈신 설〉

〈신 설〉

제26조 ~ 제29조 (생 략)

-----.

⑤、⑥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실태조사) 시장은 동물보호  
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  
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 
반려동물 및 유실·유기동물, 피학  
대동물, 사육포기 동물 등의 기본  
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 
수 있다.

제27조(동물보호정보의 활용) 시장  
은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  
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  
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에 대  
하여 정보활용의 목적과 필요한  
정보의 범위를 기재하여 농림축산  
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제28조 ~ 제31조 (현행 제26조부  
터 제29조까지와 같음)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(실태조사)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소관부서(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)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제3기 동물복지계획<sup>1)</sup>에 따라 예산을 기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- 단, 참고자료로 유기·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 변경계약 계획을 첨부함(붙임)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    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    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1) 농림축산식품부 제3기 동물복지계획('25~'29) : 학대·유기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강화(실태조사 대상 및 지역 확대, 정기화)

## 유기·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 변경계약 계획

농림축산식품부 제3기 동물복지계획 발표 예정에 따라 유기·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의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### ☐ 계약개요

- 건 명 : 유기·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
- 계약업체 : 사단법인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
- 계약금액 : \*\*\*\*\*
- 계약기간 : 2024. 11. 29.~2025. 2. 28.

### ☐ 계약변경

- 귀책소재 : 서울시
- 변경사유
  - 농림축산식품부 제3기 동물복지계획('25~'29) 발표 예정일정('25.3월)에 따라 추가적인 실태조사 파악을 위해 준공기한 연장 필요
- 변경내용 : 준공기한 연기

| 계약기간 | 당 초 | ***** |
|------|-----|-------|
|      | 변경후 | ***** |

### ☐ 향후계획

- 합의각서 날인 후 1차 준공기한 연기를 위한 변경계약 의뢰
- 유기·반려동물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('25.4월 중)

- 붙임 1.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.  
2. 합의각서 1부. 끝.